

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

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(☎ 044-201-3690)

- ▶ 행복도시의 건설 초기 건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합니다.

- 도시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축심의회 안건이 급증하여 건축위원회 업무량이 더욱 증가

* 연도별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수

구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.8
건축심의 개최횟수 (안건수)	2(4)	1(6)	5(11)	3(5)	9(27)	15(82)	17(65)
사전자문 개최횟수 (안건수)	-	-	-	-	-	22(108)	17(89)

- 이에 따라 국가 전국단위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어려워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

<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>

- ▶ 추진배경 : 행복도시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축심의회 안건이 급증하여 건축위원회 업무량이 더욱 증가로 위원회 확대 필요

▶ 주요내용

- ① 도시건설 초기 건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

-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현행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
- 위원회 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구성위원(회의 참여를 확정된 30명 이상의 위원) 과반수로 변경

*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(2012.12.12) <제5조의5(지방건축위원회)> 준용

- ▶ 시행일 : 2014.2.14.